

민간기록물의 수탁 보존기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pository Archives of Private Records

김 상 호(Kim, Sang-Ho)**

◁ 목 차 ▷

1. 서 언	3.3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2.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	3.4 대학기록관 및 연구소
3. 수탁 보존기구의 성격과 기능	3.5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3.1 국가기록원 및 지방기록관	3.6 일반기업 및 기록보존전문기업
3.2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4. 결 언
	<참고문헌>

< 초 록 >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민간기록물은 사회적 보존시스템을 통해 보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기록물을 기증 또는 위탁 받아 보존할 사회적 장치, 수탁 보존기구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그 기구의 기능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점검한 것이다. 현재 민간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거나, 앞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할 기관은 국가기록원과 지방기록관,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연구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대학기록관 및 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있으며, 민간기구로는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기록보존전문기업을 들 수 있다. 보존을 담당하는 기구와 단체가 협력해서 민간기록물을 분담해서 보존하고, 전문 인력과 시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록보존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要語 : 민간기록물, 기록관, 기록보존

< ABSTRACT >

Private papers and records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s should be preserved by the public archives.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archives where donated private papers and records should be kept and preserved. By surveying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07년 5월 15일 최초심사일: 2007년 5월 17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21일

various archival institutions, this study attempts to illustrate how the public archives system can be implemented and maintained, and which functions should be improved.

It is suggested that functions of both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local government archives,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nd university archives, and private institutions such as Group for the People without History at Yongnam University, and various companies should be extended. It is necessary that the national archival grant must be established and adequately allocated to enable such archival institutions to cooperate in collecting and preserving more private papers and records and support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acilities, and services.

Key words : Private Records, Archives, Records Management



1. 서 언

민간기록물은 일반인이나 민간단체가 생산 취득 보유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 기록물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여러 유형의 민간기록물 중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 국가가 그 보존의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실제 민간기록물의 보존을 위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존가치가 크지 않는 민간기록물 대부분은 사회, 심지어 그 보유자로부터도 어떠한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것을 간직했던 개인이나 단체와 존재의 운명을 함께 한다.

오늘날 평범했던 과거 인물의 생활, 사고, 그리고 사회, 문화를 증거 하는 기록물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당시로선 보존할 가치나 이유가 적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현재 인물의 생활, 사고, 사회 및 문화는 뉴미디어, 대중매체의 발달로 미래에 보다 분명하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피상적인 모습에 불과할 수 있다. 한 시대를 산 인물과 그가 속했던 사회의 진면목은 민간기록물이 없이는 구명하기 어렵다.

양적으로 많고 그 가치를 확신하기도 어려운 일반인, 문중, 민간단체, 기업의 보유 기록물은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보존할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폐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보존해야 할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할 사회적 장치, 시스템의 미비로 폐기된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 기록보존 전문인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국가는 공공이 아닌 민간의 기록물에 대한 보존의 책무를 지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민간기록물을 보존할 사회적 장치는 무엇이고, 그 성격과 기능은 어떠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여러 보존기구의 규정과 운영상황을 기초로 자체 보존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보유 기록물이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수탁 보존기구의 성격과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수탁이란 기록물의 소유권을 보존기관에 양도하는 기증, 그리고 기록물 보유의 권한과 책임을 보존기관에 위임하는 위탁의 상대적 개념이다.

2.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

민간기록물은 고문서, 사문서, 편지, 일기, 메모, 가계부, 사진, 파일, 테이프 등 그 형식이나 내용, 물리적인 형태에 관계없이 민간에서 생산되거나 보유 중인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가리킨다. 민간기록물의 유형을 형식이나 내용,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기록물의 평가와 수집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 않으며,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의 성격, 위상, 기능, 사회적 임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그 가치를 판단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민간인으로서 개인의 위상과 기능은 그가 종사하는 직업 및 사회적 활동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해당 직업 및 활동의 사회적 성격, 영향력, 그리고 직업이나 활동 내에서 개인의 위상, 기능이 기록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민간단체, 기업이 생산하고 보유한 기록물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공공기록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을 보완한다. 공공기록물이 증거 할 수 없는 많은 사실을 민간 기록물이 담아내고 있다.

주제 분야의 연구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민간기록물은 교육 자료로서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민간기록물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문학이나 예술 작업의 좋은 소재가 되며, 그 자체로서 하나의 훌륭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한다.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이 지닌 내용, 즉 논제의 중요성, 사실성, 체계성, 원문성, 포괄성, 희귀성의 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형태 및 이용 상의 특성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기록물의 가치는 그것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구의 성격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어떤 기록보존기구에서 전혀 수집할 의사가 없는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정 기록보존기구에서는 중요한 기록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기준에 준거하여 기록물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은 균형 있는 기록유산의 축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부문에서 기록물의 가치가 판단되는 사회적 시스

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기록물의 수탁 보존기구는 소장자의 기증이나 위탁을 통한 기록물 수집단계에서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증은 법률 상 증여에 해당한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증여 내용을 한정하는 계약이 소장자와 보존기구의 양자 사이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기증자, 기록물의 내용, 수량,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복사, 이용대상자의 제한 등 물리적인 양도와 법적 권리에 관한 사항이 바로 그것이다.

수탁 보존기구는 기록물의 열람이나 조사 연구 전시 등에 관하여 기증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급적 이용에 관한 부대조건이 없도록 해야 한다.¹⁾ 그러나 기증자의 권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키는 것은 기록보존 전문직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이다. 위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탁은 굳이 말하자면 보존기간이 한정적일 뿐이다.

수탁 중심의 보존기구는 기록물의 확보를 위해 설립목적과 활동, 수집범위, 기증 자료의 중요성, 보존기관의 안정성, 기록물의 법적 권리 등에 관한 정보를 잠재적인 기증자, 위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차 불필요한 기록물의 기증이나 위탁을 거절할 명분을 갖기 위해 수집범위를 분명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3. 수탁 보존기구의 성격과 기능

3.1 국가기록원 및 지방기록관

국가기록원과 지방기록관은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하지만 일반인이나 기업, 민간단체의 기록물 가운데 공공성을 지닌

1) 라창호 역, 「제가문서의 수집과 정리」, 72.

것은 국가의 기록유산으로서 그 수집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기록원이 국가지정기록물이나 주요 기록정보자료로 민간기록물을 수집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자료 가운데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국가기록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며, 지정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장이 그 보호를 위하여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게 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록원이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게 했다.²⁾ 그밖에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을 국가기록원장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³⁾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물을 수집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법률의 시행 초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단지 기록물의 사료성, 문화성을 판단하는 틀에서 벗어나 인물의 역사성, 대중성을 참작해 상징적으로 해당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민간기록물의 기증과 위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록물에 준하는 민간기록물의 활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은 국가지정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자료,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⁴⁾ 위탁 보존 중인 국가지정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⁵⁾ 이는 그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며, 이용의 편의제공, 활용성의 제고를 위한 보존기구의 각별한 준비가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에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체계 구축을 기록관리 혁신사업으로 정하여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민간의 중요한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기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10. 4. 법률 제8025호 제45조.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한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집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민간에 홍보하고, 중요 민간기록물의 소재를 파악하여 수집에 주력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일반인, 기업, 민간단체가 소장하는 기록물은 상당수가 훼손이나 멸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수집 정리하여 정보화하고, 기록정보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명분이 아니더라도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유산의 보호라는 원칙 위에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수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문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시청각기록물, 구술기록물 등으로 수집범위를 넓히고 있다.⁶⁾ 이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민간기록물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국가기록원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정책 기획 및 수집업무 총괄, 중요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업무는 수집관리팀이 담당한다.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주요 기록물 소장자를 대상으로 기증이나 위탁을 유도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주요 민간기록물의 원본 및 사본의 매입을 추진하며,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구술기록, 영상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협력하는 일은 바람직해 보인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광역시, 도, 그리고 시, 군, 구에 설치되는 지방기록관은 관할 공공기관 기록물의 보존기구이다. 관할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의 수집 업무도 관장하는데,⁷⁾ 구체적으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기록원의 기능에 준하여 지방지정기록을 지정하고, 지방에 관한 주요 기록정보자료,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방기록관이 문중 단위로 전래하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그것이 공공기록물과 더불어 특정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면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⁸⁾

지방기록관이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여러 인물과 기업, 단체의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고, 국가기록원이 대통

6) 국가기록원, 『역사로 가는 오늘』 (대전: 국가기록원, 2007), 65-68.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8) 라창호 역, 『제가문서의 수집과 정리』, 25.

령 뿐 아니라 주요 정부직 공무원,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기업,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민간단체의 기록물을 수집 보존해야 한다.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수집 대상 민간기록물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기록물 자체의 가치, 역사성, 문화성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가치, 해당 기록물에 관련된 인물, 기업, 단체의 성격 또한 큰 의미를 지닌다. 국가기록원, 지방기록관은 민간의 국보급, 또는 보물급의 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생각보다는 보존할만한 민간기록물이 국내 보존기구 어디에선가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과 체계를 세우고 모범을 보이며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3.2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의 기구는 국가기록원과 같은 기록물 전문보존기관이 아닌 전문연구기관이다. 따라서 보존의 책무는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⁹⁾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하는 사료는 국사연구의 자료가 되는 문서류이다. 법률 상 정당, 공공단체, 사회단체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보존 문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 사료적 가치를 감안하여 이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사료의 소장자 또한 그 소장사료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위탁보존 또는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사료에 한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준하는 민간기록물의 보존책무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 소장자로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사료의 위탁보존 요청을 받으면 당해 사료의 분실, 훼손 기타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보존사료를 따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문서류의 보존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하여 필요 시 당해 문서를

9)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2005. 1. 27. 법률 제7351호 제4조.

수탁 보존할 의무가 있다.¹⁰⁾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직제 상 편사부 사료조사실이 사료의 조사 수집 정리 분석 평가 및 발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소장 문서류의 이관 정리를 맡고, 자료정보실은 사료의 등록 보존 제본 복원 및 관리, 사료보존 기술지도, 사료열람, 사료의 수탁보존을 분장한다.¹¹⁾

특히 국내사료, 지역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사업 외에 격동의 20세기를 살아온 다양한 인물의 경험과 기억을 채록 정리하여 문헌사료의 제약과 공백을 보완하는 구술 자료의 생산과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구술 자료의 사료성을 보완하는 관점에서도 구술자의 보유 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을 통해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¹²⁾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장서각 내의 고문서연구실이 고문서에 대한 수집과 조사연구, 기증기탁사업, 전시회 및 도록간행 등 사업을 진행한다. 개인이나 문중의 고문서가 화재나 도난의 문제로 관리가 어려워져 4백 평 규모의 고문헌기증기탁실에 향운향습 시설을 갖추고 고문헌의 기증 기탁 제도를 1997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현재 기증 기탁된 자료는 20개 문중에 2만 2천여 점이며, 그 중 고문서는 1만 7천여 점에 달한다(표 1 참조).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고문헌박물관을¹³⁾ 비롯해 향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문중 보유의 고문서에서 한국학연구와 관련된 개인의 기록류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연구 성과를 내는 일종의 고문서기록연구관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10)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 4. 27. 대통령령 18808호 제7조, 제12조.

11)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개정 2005. 11. 1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1호 제10조.

12)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2005. 1. 27. 법률 제7350호 제1조.

13) http://www.aks.ac.kr/aks_kor/Sub/Aks_Jangseo.aspx?sub=415&id=437

<표 1> 장서각 기증기탁 고문서 현황¹⁴⁾

자료명	원소장처	수량
진주유씨전적	안동	2,498
반남박씨전적	의정부	384
광주안씨전적	광주	314
해남윤씨전적	해남	24
청양김씨전적	양주	75
진주유씨전적	안산	1,452
경주손씨전적	경주	983
진주이씨전적	여주	3
진주정씨전적	상주	1,320
인동장씨전적	대구	1,561
고성이씨전적	안동	4,419
안동김씨전적	대전	234
초계정씨전적	거창	177
무안박씨전적	영덕	1,972
안동김씨전적	양근	71
의령남씨전적	밀양	8
여주이씨전적	경주	2,024
계		17,519

한국국학진흥원은 한국학 전문연구기관으로 보존시설을 갖추고 특별히 유교 관련 기록문화재들을 기탁 받고 있다. 1996년 법인 설립 당시 문중이나 서원 등 민간에 소장된 기록문화재의 열악한 보존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민간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관심은 각별하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중심이 되는 것은 유교문화를 주제로 한 유교문화박물관이다. 4층 규모의 박물관 건물에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수집 기록물을 보존하는 수장고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탁 의사를 밝힌 문중에 대해서 한국국학진흥원은 인수 전용차량으로 국학 자료를 안전하게 접수하고, 기탁자에게는 보관증서 및 보관자료목록을 교부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위탁관리제도는 소유권은 원소장자에게 그대로 인정해주고,

14) http://www.aks.ac.kr/aks_kor/Sub/Aks_Jangseo.aspx?sub=415&id=437

보관과 관리만 무료로 대행해주는 자료관리 방식이다.¹⁵⁾

문중 중심의 한국학 자료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보다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겠다. 비록 두 기관의 보존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확대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보존기금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학 연구를 위한 기록유산의 보존은 유교가 아닌 불교의 측면에서도 함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사찰에 건립된 성보박물관을 통해 불가의 기록유산이 보존되는 사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찰을 포함해 불교계의 다양한 기록유산이 보존될 시스템이 문화정책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3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¹⁶⁾ 이를 위해 독립기념관은 법률 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는 물론이고 일반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복사, 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¹⁷⁾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제 상 사무처 소속의 자료정보팀이 전시자료의 분류, 보관, 보존처리, 자료의 복제 대여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그 업무를 뒷받침할 각종 전시자료 및 연구자료의 수장고 시설은 향온향습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2006년 말을 기준으로 독립기념관에는 개인 및 단체가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맡긴 위탁자료 2,061건을 포함해 모두 8만 건에 달하는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표 2 참조) 독립 유공자의 구술 자료를 확보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와 협

15) <http://www.koreastudy.or.kr/m01/introduce.jsp>

16) 독립기념관법, 2005. 5. 18. 법률 제7495호 제1조.

17) 독립기념관법, 제20조.

력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독립 유공자, 또는 그 상속권자로서 후손이 보유한 기록물에 한정하여 일차적인 수집 보존기구로서 독립기념관이 기능할 필요가 있다.

<표 2>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 현황¹⁸⁾

구 분	전 적	문 건	수 기	서 화	사 진
점 수	11,928	29,344	88	505	13,516
구 분	무 기	유 품	기 타	위 탁	계
점 수	179	978	21,009	2,061	79,608

전쟁기념관은 대외항쟁사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지켜온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기구이다.¹⁹⁾ 전쟁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하여 전쟁기념사업회가 전쟁기념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홍보, 교육, 간행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²⁰⁾ 직제 상 유물부가 전쟁 군사관련 유물의 발굴 및 수집업무, 수장고 및 보존처리실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고급의 전쟁 군사관련 무기류, 장비류, 복식류, 훈장 및 기장류, 문서류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고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증서제공, 전시 자료의 실명 명기, 중요 행사 초청의 특전을 주고 있다. 전쟁기념관이 기록보존의 관점에서 참전 예비역의 보유 기록물, 방위산업체, 또는 군사관련 단체의 기록류에 한정하여 일차적 수집 기구로서 그 기능을 확대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3.4 대학기록관 및 연구소

국공립, 사립의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민간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활용은 대학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의 하나이

18) <http://www.i0815.or.kr> 소장자료현황

19) <http://www.warmemo.co.kr/intro/profile/profile.jsp>

20) 전쟁기념사업회법, 1999. 1. 21. 법률 제5644호 제5조.

다. 아직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기록관은 초보단계에 있지만 지금부터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기록관은 본부직할 부속시설로서 본교 관련 기록을 수집 보존하여 본교 구성원 및 일반인의 활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운영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대학기록물의 관리와 열람, 연구 등 업무, 그리고 교직원 및 동창 기록의 수증, 행정자료 관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²¹⁾ 기록관이 기증 받는 자료는 사진, 시청각자료, 행사자료, 간행물, 기념품, 교표, 교기 배지, 강의자료, 시험지, 기타 대학과 관련된 모든 자료이다.

사립대학인 연세대학교의 기록보존소는 교내 각 조직 및 구성원이 생산한 모든 기록정보의 최종 처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서로서 이관 및 수집된 기록정보의 폐기, 정리, 보존, 활용 등의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기록정보의 범위는 기능별로 행정기록정보, 학술기록정보, 기타기록정보, 시청각자료, 기념 박물관류, 전자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는 활용도가 높은 특정 기록정보에 대해 별도의 주제별 정보파일을 작성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기록정보의 저작권을 고려해 공개등급을 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사 편찬작업에 참여하고, 웹페이지를 구축해 기본정보와 각종 기록정보, 이차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²²⁾

대학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국공립대학, 그리고 전통이 있고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 기능하는 사립대학은 기록관이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대외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며,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기록관 자체로는 인원, 시설, 예산의 제반 측면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대학 내에서 특성화된 부설연구소, 중점연구

21) 서울대학교기록관규정, 제1190호. 2001. 5. 24. 제3조.

22) 기록보존소규정, 1999. 1. 29. 제정, 2005. 12. 16. 개정.

소, 거점연구소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대학기록관은 보존의 기능을 수행하고, 해당 기록물을 토대로 한 연구와 교육의 기능은 연구인력을 보유한 연구소가 수행하면 된다. 기증을 받기 위한 섭외는 대학기록관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연구소와의 협력 사업은 대학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동을 보다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여러 대학기록관들은 2005년에 창립한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를 통해 대학 간 주제와 지역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대학은 경쟁력이 있는 특성화 분야가 있다. 그 분야가 비록 최근에 성립된 학문분야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IT 분야라면 이미 IT 산업체에서 현용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이 특성화된 대학기록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가치가 미미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것들의 축적의 바탕 위에서 가치 있는 기록물, 가치 있는 컬렉션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3.5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출범하였다.²³⁾ 역사를 남기지 못한 민중의 생활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민족문화연구소, 목포대학교 호남학연구소,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등 다섯 개의 연구소와 한국문화인류학회, 역사민속학회 등 두 개의 학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등이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에 등록된 공동 연구자가 51명, 연구보조원이 48명이었으며, 연구진의 전공은 문학,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철학, 법학, 건축학, 정보통신 등으로 광범위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자연과 환경, 몸과 마음, 삶과 일, 놀이와 공부, 가족과 이웃, 마을 고을 나라, 여성과 아동, 사람의 종류, 공간과 교류, 세월과 신세타령 등 10개 개념을 연구주제로 삼았고, 구술 자서전, 물증, 문서, 사진, 소설, 영화

23) <http://www.minjung20.org>

등 자료를 집성하고, 자료집을 발행하고, 심포지움, 워크샵, 사진전 등을 개최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스 구축을 통해 구술, 사진, 비디오, 문서자료를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²⁴⁾

기록유산의 발굴과 보존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민간기구가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크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지속성에 있다.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각종 민간기록물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기구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기구들을 지원할 기록보존기금이 마련되어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기구 및 단체의 운영보조비, 기록보존을 연구, 교육, 학습하는 기관 및 인원에게 연구비, 운영비, 장학금의 명목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3.6 일반기업 및 기록보존전문기업

개인이나 기업이 그들 보유 기록물을 더 이상 보존할 방법이 없을 때 그 기록물은 폐기되거나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 기록물의 작성과 유지 책무를 지닌다. 일정기간 비현용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 기업은 자체 보존시설 및 인원을 갖추기도 하고, 효율성을 이유로 외부의 기록보존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²⁵⁾

기업 가운데에는 그들 기업의 역사, 발전을 증거하는 기록물 뿐 아니라 관련된 주제에 한정하여 공익성, 문화성의 측면에서 기록류를 수집 보존하는 기업도 없지 않다. 기업의 그러한 기능은 별도의 문화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바뀌고, 경영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한정된 주제의 컬렉션을 가지는 기업의 박물관, 미술관 등은 민간기록물을 수집 보존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의 하나이

24) <http://www.minjung20.org/archives/Document/>

25) 김상호, “한국의 민간기업 기록보존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권 1호 (2001. 3), 205-228.

다. 그들은 기록물을 유료로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어 한독약품이 설립한 한독의약품물관이 의약품 개발, 제조와 관련이 있는 인물의 기록물을 수집한다면 그 설립 취지나 위상에 걸맞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록보존을 본질적 기능으로 삼는 기록보존전문기업, 즉 기록보존 대행업체는 미국의 경우 1980년 중반을 기점으로 생겨났다. 일종의 창고업 형태로 기업의 기록물 저장비용의 절감에 착안한 것이다. 그 성공에는 보안, 기밀유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했다. 기업의 이해, 이익에 직결된 기록물을 외부에 위탁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보안의 보증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요구되는 병원, 금융, 법률회사 등에 기록물 유지 책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었고, 그것이 그러한 대행업체들이 소규모에서 대형의 기록보존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기록보존전문기업은 기록물의 단순한 저장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문화된 시설, 인원, 기술, 서비스, 전산화된 색인, 배송시스템을 기본으로 갖추고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지역을 대상으로 1989년부터 기록보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Allstate Business Archives는 비행기엔진을 생산하고 시험하던 복합구조물을 보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재난이나 화재, 침입자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 70만 입방피트 규모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저장비용이 많이 드는 다량의 일반 기록물 외에 특별히 기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개인의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문서, 범죄자나 경쟁자의 손에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서, 건강이나 재정 등의 이유에서 법률로 보호하도록 지정된 문서들이 위탁 보존되고 있다.²⁶⁾

소속된 인원은 신원조회, 비밀유지에 관한 동의, 무작위 약물검사를 통해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화재 등 기록보존과 관련이 있는 면허를 소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보존시설은 화재감지 및 소화시설, 온습도 조절, 보조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 카드키 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로 감시한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은 금

26) <http://www.allstat.com>

고시설에 격리 보관시킨다. 이 기업이 제공하는 기록보존서비스는 색인, 검색, 송달, 복사, 이미지화, 마이크로필름화, 파일포장, 폐기 등이 있다. 기업의 정보가 기록물의 폐기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물의 분쇄이다. 그 과정을 아웃소싱 하는 것이 장비운용, 인건비, 청소, 소음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다.

1985년에 설립되어 버지니아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보존 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Security Business Archives,²⁷⁾ 플로리다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보존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15년 만에 3개 지역에 총 250만 입방피트의 저장 공간을 보유하게 된 Business Archives의 기능²⁸⁾ 역시 Allstate Business Archives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업기록물은 재난, 도난으로부터 취약하고 열악한 보존환경에 있다. 외부저장시설은 효율성, 생산성 증대, 비용절감, 법률규정 준수, 소송부담 경감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록보존전문기업이 출현할 경우, 사무실 공간비용이 비싼 도심지 소재 기업, 자체 기록보존시설 및 인원을 보유하기 어려운 전문화된 기업이 주 고객이 될 것이다. 이 때 문중이나 사찰, 일반 기업이 보관 중인 중요 기록물, 문화재급 민간기록물이 검증된 기록보존전문기업에 위탁 보존될 수 있다. 대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고 홍수나 산불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며,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저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자본투입이 크지 않은 기존 시설, 폐교, 이전 군부대나 감옥 등을 활용한 형태의 전문기업의 출현을 예상해볼 수 있다.

4. 결 언

국내에서 민간기록물을 수탁 보존하는 기구의 유형과 성격, 기능,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7) <http://www.use-sba.com>

28) <http://www.businessarchives.com>

첫째,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이 증거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구실을 한다.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책무를 지닌 공공기관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아울러 수행해야 한다. 민간기록물의 가치가 기록유산의 균형 있는 보존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이 있다. 국가기록원은 전직 정무직 공무원의 사적 기록물,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기업,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민간단체의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고, 지방기록관은 그 지역 인물,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며,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 기업, 단체의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은 특별히 문중의 고문서 중심에서 한국학연구와 관련된 모든 개인의 기록류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연구 성과를 내는 기관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해야 하고,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은 각각 독립유공자의 기록물, 또는 그 상속권자로서 후손의 보유 기록물과 참전 예비역의 보유 기록물, 그리고 방위산업체, 군사관련 단체의 기록류에 한정하여 일차 수집기관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교육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국공립, 사립대학 기록관 및 연구소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활용이 도움이 된다. 대학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특성화 분야, 연구 인력이 풍부한 중점 연구소, 기점 연구소의 주제 분야와 관련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부문에서 민간기구가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민중의 생활사 자료를 수집하고, 기업의 문화재단이 한정된 주제의 컬렉션을 유지하는 것은 기록유산의 발굴과 보존 측면에서 유익하다.

다섯째, 기록보존전문기업은 영구추구를 위해 기록물을 위탁 보존하지만, 특별히 기업의 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존하며, 나아가 보존여건이 열악한

문중이나 사찰 등의 중요 기록물, 문화재급 민간기록물을 위탁 보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민간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많을수록 우리의 기록유산은 후손에게 풍부하게 전달될 것이며, 그것을 활용한 연구나 교육, 문화적 성과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민간기록물을 보존하는 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다. 전문적인 인원, 시설의 확보, 안정적인 재정보화가 없이는 이루어내기 어렵다. 균형 있는 기록유산의 축적, 개성 있는 컬렉션의 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 보존기관의 역할분담,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국가기록원 등이 그 중심에서 계획을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록보존기금을 조성하여 여러 보존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겠다.

<참고문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기록보존소규정.
독립기념관법.
서울대학교기록관규정.
전쟁기념사업회법.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록원. 「역사로 가는 오늘」. 대전: 국가기록원, 2007.
김상호. 「기록보존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김상호. “한국의 민간기업 기록보존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권 1호(2001. 3).
김재남. “사서편찬을 중심으로 한 기업기록관리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

교 대학원, 2002.

사이타마현 지역사료보존활용연합회의 편, 라창호 역. 제가문서의 수집과 정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이세진. “기업기록관리 아웃소싱의 유형과 전략.”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

과학대학원, 2004.

<http://www.aks.ac.kr>

<http://www.allstat.com>

<http://www.businessarchives.com>

<http://www.koreastudy.or.kr>

<http://www.minjung20.org>

<http://www.use-sba.com>

<http://www.warmemo.co.kr>

K C I